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회수·추천수 조작 금지〉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82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회수·추천수 조작 금지(안 제48조 제5항<br>신설 등)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2. 6.

다. 회 부 일 : 2024. 12.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회수·추천수 조작 금지(안 제48조 제5항 신설 등)

#####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8조 제5항 신설).
- 안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3조 제5호의2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 ④ (생략)<br><u>&lt;신설&gt;</u>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u>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 제73조(벌칙) -----<br>-----                                                                                                               |

| 현행                         | 개정안                                                                                                                                                   |
|----------------------------|-------------------------------------------------------------------------------------------------------------------------------------------------------|
|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br>-----.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5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u><br><u>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u><br><u>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u><br><u>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u><br><u>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u><br><u>작하는 행위를 한 자</u> |
| 6. ~ 8. (생략)               | 6. ~ 8.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온라인 공간에서의 게시글·댓글 등에 대한 조회수·추천수 조작은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하여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sup>1)</sup>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온라인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회수·추천수 조작 행위는 현재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함.
-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sup>2)</sup>.
- 판례는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경우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음<sup>3)</sup>.
- 또한, 기계적 방법으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뉴스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은 피해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뉴스 기사관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막기 위하여 보다 강화된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 추가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 행위로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음<sup>4)</sup>.

2)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4)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 둘째, 여론 왜곡·조작 방지 차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부정이용을 처벌하려는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회수·추천수 조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와 별개로, 여론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의 부정 이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회수·추천수 조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구)「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sup>5)</sup>.
- 한편, 온라인 여론 왜곡·조작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유사 개정안들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sup>6)</sup>.

5)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6) 제2200352호(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제2203370호(김미애의원 대표발의)

- 해당 개정안들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온라인상 정보의 조회수·추천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과 이용자 선택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보다는 이용자의 권리침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가 아닌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조회수·추천수 조작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현행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가치중립적이고 불법성이 없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프로그램 사용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